



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(CRCB)와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(CRSB) 관련 안내문

(2020 년 10 월 6 일)

CRB 와 함께 2 가지의 Benefit 이 추가가 되어 안내 드립니다. 두 Benefit 은 1. Canada Recovery Caregiver Benefit (CRCB) 와 2.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(CRSB) 입니다.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 조건이 만족 되신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. 단 신청하시는 혜택은 CRB 와 중복 신청은 불가 합니다.

- 보조 기간: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까지 지급 (52 주)
- Benefit 액수: 주에 \$500, 1 주에 한번 지급됨 (tax 원천징수 되어 \$450 지급)
- CRCB 는 총 26 번 신청 가능 (최대 26 주)
- CRSB 는 총 2 번 신청 가능 (최대 2 주)

Canada Recovery Caregiver Benefit (CRCB)	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(CRSB)
<p>CRSB 는 COVID 로 인해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때문에 일주일의 50%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최대 26 주간 주당 \$500 (Taxable Income, 50 불 세금 제외하고 지급)불을 지급합니다.</p> <p>만약 위의 상황이 1 주이상 지속이 된다면 CRCB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CRSB 의 신청 기간은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일까지 Period 는 52 주의 Period 가 있으나, <u>총 26 주까지</u> 신청 가능 합니다.</p>	<p>CRSB 는 COVID 감염 및 의심 증상으로 인해 일주일의 50%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최대 2 주간 주당 \$500 (Taxable Income, 50 불 세금 제외하고 지급)불을 지급합니다.</p> <p>만약 위의 상황이 1 주이상 지속이 되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보조기간은 기간은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일까지며 <u>총 1 주씩 2 회</u> 신청이 가능합니다.</p>

신청자격

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CRCB 또는 CRSB 지원이 가능합니다.

CRCB (Caregiver)	CRSB (Sickness)
<p>*동일 세대(동일주소에서 가족으로 생활)중 한 명만 혜택을 신청할 수 있음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주당 할당된 일정을 50%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</p> <p>가족 중 해당 일주일 동안 같은 혜택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</p> <p>다음 사유 중 하나로, 만 12 세 이하의 아이를 돌보고 있거나,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COVID 19 로 인해 학교, 탁아소, 보호 시설이 폐쇄되거나 이용 불가능 2. COVID 19 로 인해 정기적인 보호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3. 보살핌을 받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a. COVID 19 감염자 이거나 증상이 있음 b. 의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COVID-19 에 걸릴 경우 심각한 건강 합병증의 위험이 있음 c. COVID 19 로 인한 자가격리 중 	<p>아래의 이유 중 하나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하고 있으며, 이때문에 근무시간의 50%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는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COVID-19 확진자 이거나 의심이 되는 사람 2. 자가격리를 아래의 사람들에게 권고 받은 사람 Your employer, a medical practitioner, a nurse practitioner, a person in authority, the government, your public health authority 3. Covid-19 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아래의 사람들에게 권고 받은 경우 Your employer, a medical practitioner, a nurse practitioner, a person in authority, the government, your public health authority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음 중 어느 것도 신청했거나 수령하지 않았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Canada Recovery Benefit (CRB) ○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(CRSB) (CRCB 를 신청하는 경우) ○ Canada Recovery Caregiver Benefit (CRCB) (CRSB 를 신청하는 경우) ○ Short-term disability benefits ○ Workers' compensation benefits (WSIB) ○ Employment Insurance (EI) benefits ○ Québec Parental Insurance Plan (QPIP) benefits • 캐나다 체류자 (영주권 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음) • 최소 만 15 살 이상 • 유효한 SIN 을 가지고 있음 • 2019 년 또는 신청하기 전 12 개월 동안 \$5,000(공제 전) 이상의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Employment income ○ Self-employment income ○ Maternity and parental benefits from EI or similar QPIP benefits • 고용주로부터 동일한 신청 기간동안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	

신청방법

Period 1 의 기간은 9 월 27 일부터 10 월 3 일까지이며, 주마다 신청 가능합니다. 마지막 신청 가능기간인 Period 52 는 2021 년 9 월 19 일부터 9 월 25 일입니다. 신청 대상이 되는 주가 끝나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60 일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Period 1 의 경우 10 월 5 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 CRCB 와 CRSB 는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아 다음 Period 를 신청하시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
1. Online - CRA My Account Log In
2. Phone - (1-800-959-2019/1-800-959-2041) (6AM-3AM Eastern Time)

필수 필요 정보

- Social Insurance Number (SIN), postal code, 생년월일

신청 시 상황에 따라 CRA 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, 신청 전 아래의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.

- 직원이거나 직원 이였을 경우
 - a. 최근 급여명세서 (Paystub)
 - b. Salary 가 명시된 재직증명서(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,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)
 - c. ROE (Record of Employment)
 - d. Bank Statement (이름, 주소 및 급여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)
- 자영업자일 경우
 - a. 매출/매입 증빙 서류 (매출전표, z-slip, invoice, receipts – 날짜, 이름이 명시된 영수증)
 - b. 사업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
 - c. 신청자가 고용 또는 자영업 소득으로 \$5,000 이상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문서
- Maternity Leave 또는 Parental Leave 에 관련하여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는 경우
 - a. Statement of benefits
 - b. Bank Statement (이름, 주소 및 급여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)

자격 여부 및 유의사항

CRA 는 신청자가 CRCB 와 CRSB 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추적 과정을 거쳐 허위로 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바, 이 점 각별히 유의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.

추가 update 되는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https://www.canada.ca/en/revenue-agency/services/benefits/recovery-caregiving-benefit/crcb-who-apply.html>

Francis Kim & Company CPA PC

김동균 공인 회계법인

200 Finch Ave. West, Suite 230

Toronto, ON M2R 3W4

T: 416-225-6504 Fax: 416-225-8574

info@franciskim.ca